

	학생준칙	규정번호	3-6-9
		제정일자	1994.03.01.
		개정일자	2008.03.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학생성공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생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안산대학교 학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 이 준칙의 개정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장 선서, 보증인

제3조(선서)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인)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보증인 1명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학부형 또는 학비 지원자로 한다.

제5조(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학생의 신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보증인의 변경) 보증인 및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등록 및 학생증

제7조(등록 및 학생카드)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생카드[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증 교부) 입학수속을 마친 학생(편입생포함)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9조(학생증 휴대의무) ① 학생은 학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수험, 도서열람, 기타 대학내 제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10조(학생증 재발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지원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1조(학생증 반납) 퇴학, 휴학, 기타 학적이 변동될 때에는 학생증을 학생취업지원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단체, 집회, 게시, 인쇄물배포

제12조(등록) 모든 단체의 등록(신규, 재등록)은 학칙 제35조에 의거 매 학년 초(개강 1개월 이내) 단체등록승인원, 지도교수승락서, 회칙, 전년도사업실적, 금년도 사업계획서, 회원명단(30인 이상)을 구비하여 학생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징계) 승인을 얻지 않은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와 승인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학칙에 의하여 징계한다.

제14조(소속) 모든 단체는 총학생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칙과 학생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취소) 등록된 단체가 설립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정당이나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집단적으로 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활동을 하거나 기타 행사 실적이 없는 단체는 학생지도 위원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범위)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총학생회 회칙 제8조와 대학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특히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7조(단체승인) 학생단체는 임원개선이나 회칙 개정 후 반드시 학생취업지원처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행사허가)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외를 막론하고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에 대하여 행사일시 7일전까지 행사허가원을 학생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학생취업지원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광고 또는 인쇄물의 게시배포
2. 외부인사 학내초청

제20조(게시기간) 게시용지 규격은 4절지(신문지 1면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2배의 크기까지 할 수 있으며 게시기간은 7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배포허가) 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쇄물의 원본 2매와 인쇄물 배포원 서식에 배포목적, 일시, 장소 및 대상을 기재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간부승인) 총학생회 각 부서, 대의원은 학년 초에 반드시 소정양식(학생취업지원처)에 의하여 그 부서와 구성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활동보고) 총학생회 각 부서, 각과 대의원은 매 학기 초에 그 활동계획서 및 전 학기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승인)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연도별 행사 운영계획서와 예산안, 결산보고서는 지도교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교내 정기에배 참석

제25조(예배참석) ① 학생은 매주 교내 정기에배와 춘계 및 추계 신앙 강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교내 정기에배와 춘계 및 추계 신앙 강좌 출석은 기독교 관련과목 출석점수에 반영한다.

③ 정기에배의 결석일수가 한 학기에 2회 이상일 때에는 지도교수와 면담하고, 3회 이상일 때에는 교목의 지도를 얻어야 한다.

제6장 대외행사참가

제26조(대외행사참가) 학생이 개인이나 단체로 학교명을 사용하여 대외행사를 주도하거나 참가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취업지원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참가범위)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 이외에는 시험기간 중 대외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28조(참가 결과 보고서) 제27조에 의거하여 대외 행사에 참가한 개인이나 단체의 장은 지도교수를 거쳐 참가 결과 보고서[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활동 일반 준수사항 및 주소변경

제29조(복장) 학생은 신분에 맞는 복장을 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30조(부직) 학생은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흥행단체나 유흥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직 및 활동을 할 수 없다.

제31조(음주 및 흡연) 대학은 기독교계통학원으로 학생은 학생상벌규정 제3장 제6조 제3호에 의거 교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강의실에서의 음주 흡연은 절대 불허한다.

제32조(야간잔류) 학생의 교내활동은 23:00 이후에는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일로 야간 잔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야간 잔류 신청서를 지도교수, 학과장을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관은 예외규정에 따른다.

제33조(거주지의 변경) 학생은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도교수와 학생취업지원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199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